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金容錫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03 |
|----------|-----|

발의년월일 : 2015년 8월 27일

발 의 자 : 김용석(도봉), 김기만, 김정태,
김제리, 신건택, 오경환,
오승록, 이숙자, 장인홍,
최관술, 최호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펼쳐 나가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서울시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서울시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의 의견수렴)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시민,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① 시의 관광진흥 및 정책방향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내 관광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의 촉진과 시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

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광특구 운영상황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광거점 중 유력한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특구로의 전환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신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서울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서울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서울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그 외에 설립·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제12조 (종합관광정보센터)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종합적이고 신속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종합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관광객 유치에 위한 회의 등 육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광종사원 교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 여행업 육성사업
2. 우수 숙박시설 지정·육성사업
3.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4.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5.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에 있어서 시민 자원봉자의 참여 확대 및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표창)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관광자문위원회),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제10조(서울관광협의회 설립),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2조(종합관광정보센터), 제13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제14조(관광종사원 교육), 제15조(관광통계), 제16조(재정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가 기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면, 제6조와 제15조 규정에 따른 비용만 발생

※ 서울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기추진 사업현황은 [붙임2] 참고)

- 조례안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2조(종합관광정보센터), 제13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제14조(관광종사원 교육), 제16조(재정지원)

※ 현 시점에서 구체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업

- 제10조(서울관광협의회 설립)의 경우, 현시점에서 설립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곤란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우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3조제1항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추계내역은 [붙임1] 참고)

4.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여차민 정책조사팀장(02-3705-1288)

[붙임 1] 추계 내역

- 전제 및 방법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3)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반영

○ 총비용 :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관광위원회 운영 (제6조)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 | 관광통계 (제15조)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1,350,000 |
| | 소계(b)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 □ 총 비용(b-a) |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500,000 |

가. 관광자문위원회 운영(제6조) 비용추계

- 전제 및 방법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3)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반영하여 추계
- 비용 : 150,000천원
 - 비용 = 연간비용×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0(명)×150(천원)×12(월) = 18,000천원
 - 토론회 개최 = 10,000천원
 - 기타 운영비 = 2,000천원

(단위 : 천원)

| 1차년도 (2016) | 2차년도 (2017) | 3차년도 (2018) | 4차년도 (2019) | 5차년도 (2020) | 합계 |
|----------------|----------------|----------------|----------------|----------------|---------|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50,000 |

나. 관광통계(제15조) 작성

○ 전제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 발생
- 3) 서울시 주관부서 사업계획 반영

○ 비용 : 1,350,000천원

- 비용 = 연간비용×5년(추계기간)
- 연간비용: 270,000천원
 - 서울관광(분기별 1회) 제작 : 100,000천원
 - 외래관광객 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 170,000천원

(단위 : 천원)

| 1차년도 (2016) | 2차년도 (2017) | 3차년도 (2018) | 4차년도 (2019) | 5차년도 (2020) | 합계 |
|----------------|----------------|----------------|----------------|----------------|-----------|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270,000 | 1,350,000 |

[참고] 관광통계(제15조) 작성 비용 산출내역(자료: 주관부서 사업계획서)

○ 서울관광 제작(연4회) : 100,000천원

- 연구원 = 75,973천원 = 2,110천원×3명×12월
- 연구보조원 = 5,642천원 = 940천원×1명×6월
- 기타경비(유인물 제작, 소모품비 등) = 16,663천원
- 일반운영비 이내 = 1,720천원(경비의 2%)

○ 외래관광객 실태 및 불편사항 조사 : 170,000천원

- 연구원 인건비 = 35,680천원(책임연구원1, 연구원4, 연구보조원 2)
- 면접원 수당 = 72,000천원 = 18,000원×4,000명
- 동행취재 섭외 = 9,000천원 = 300,000원×10명×3일

- 면접원 교육비 = 144천원 = 12,000원×12명
- 면접원 교통비 = 3,600천원 = 6,000원×12명×50일
- 번역 = 2,880천원 = 60,000원×6페이지×8개 언어
- 검수 = 1,600천원 = 200,000원×8개 언어
- 에디터 수당 = 7,033천원 = 70,334원×5명×20일
- 코팅원 수당 = 7,033천원 = 70,334원×5명×20일
- 편칭비 = 1,200천원 = 150원×2card×4,000명
- 통계프로그램 설계비 = 870천원 = 145,046원×2명×3일
- 답례품비 = 9,600천원 = 2,000원×4,000명×120%
- 설문지인쇄비 = 1,152천원 = 40원×6페이지×4,000명×120%
- 보고서인쇄비 = 1,500천원 = 30,000원×50부
- USB : 20,000원 = 10,000원×2개
- 일반관리비 등 : 16,687천원